

< 2021학년도 제5차 규정 개정(안) 현황 >

소관부서	공고 NO	규정명	제정	개정	폐지	비고
기획처	35	[4-4-14] 외국인 학생에 관한 규정		○		P.1
계			-	1	-	

외국인 학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(안)

1. 제안이유

가. 외국인 학생에 입학자격에 대한 규정 개정

- 외국인 학생들 입학자격 중 한국어 구사능력에 대한 외부환경(전염병, 전쟁 등)에 따른 입학자격 범위 등의 구체적 기준 마련을 통한 입학 활성화

나. 외국인 학생에 대한 학사관리에 대한 규정 개정

- 외국인 학생들의 수강신청 지도와 관련한 구체적 기준 마련을 통한 외국인 학생지도에 대한 효율화 도모

2. 주요내용

가. ‘한국어 구사 및 학업 능력을 갖춘 자 등으로 상기 조항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법무부 출입국, 외국인정책본부의 관련지침 준용한다.’ 를 추가하여 외국인 학생에 대한 입학자격의 기준 마련

나. 수강신청 지도와 관련하여 ‘1학년 1학기의 경우 학과장의 책임 하에서 조교가 일괄적으로 수강신청을 하도록 함’ 을 추가하여 외국인 학생들의 수강신청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토의과제

가. 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규정 : 없음(상위규정 및 관계규정이 있을시 작성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없음(관계부서 및 사전 협의 부서 있을시 작성)

라. 기 타 : 없음

붙임 1. 외국인 학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(안) 신·구조문대비표 1부.

2. 외국인 학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(안) 전문 1부. 끝.

외국인 학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(안)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입학자격)</p> <p>① ~ ② (생 략)</p> <p>③ <u>본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제 1항에 따라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3급 소지자만 가능하나 일부과정(교환학생, 정부초청장학생, 외국정부지원 장학생, 예체능 학과 입학생 및 기술직 학과 입학생, 이중언어 과정 입학생 등)의 경우 입학기준을 완화하여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2급 소지자도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 ~ ⑤ (생 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 설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 설></p> <p>제7조(학사관리)</p> <p>① ~ ② (생 략)</p> <p>③ <u>수강신청은 해당 학과 및 국제교류센터에서 지도한다.</u></p>	<p>제5조(입학자격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유학생이 본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</u>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1. <u>한국어능력시험(TOPIK) 3급 이상 취득자 또는 이에 준하는 학업 능력을 갖춘 자</u>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2. <u>본 대학교 학칙에서 규정하는 입학 자격을 갖춘 자</u>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3. <u>국내 관련법에 따라 입국 및 입학이 가능한 자</u></p> <p>④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<u>특수성이 인정되는 학과 및 별도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유학생에 대하여는 제3항 제1호의 조항을 예외로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⑦ <u>상기 조항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법무부 출입국, 외국인정책본부의 관련 지침을 준용한다.</u></p> <p>제7조(학사관리)</p> <p>① ~ ② (생 략)</p> <p>③ <u>수강신청은 해당 학과 및 국제교류센터에서 지도한다. 다만, 1학년 1학기의 경우 학과장의 책임 하에서 조교가 일괄적으로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.</u></p>

외국인 학생에 관한 규정

제정 2017. 1.10 개정 2017.12. 6

개정 2022.00.00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9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8에서 정하는 사항 및 교육부의 “외국인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”에 따라 국제대학교(이하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에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하는 외국인유학생의 입학전형과 학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“외국인 특별전형”이란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신(편)입생 입학전형을 말한다.
- 2.“외국인유학생(이하“유학생”이라 한다)”이란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본 대학교에서 수학하는 외국인이나 본 대학교와 외국대학 간에 체결한 교류협정 등에 의한 교류학생을 말한다. 다만, 북한이탈주민은 제외한다.

제3조(주관부서) 주관부서는 국제교류센터로 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.

1. 유학생의 신·편입학 관련
2. 유학생의 학교생활 및 안전관리
3. 유학생의 개별 상담
4. 유학생의 취업지원
5. 유학생의 출입국 관련 편의 제공을 위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와의 연락업무
6. 기타 유학생에 관한 사항

제4조(관리부서) ① 유학생의 학사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은 교학처 및 해당 학과에서 담당한다,
② 관리부서 담당자는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을 숙지하여 제반 업무 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.

제5조(입학자격) ① 본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“외국인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”에서 정한 수학능력과 재정능력을 갖추어야 한다.

② 유형별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신입학 :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으로 인정되는 자
2. 편입학 :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

③ 유학생이 본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<개정 2022.00.00.>

1.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3급 이상 취득자 또는 이에 준하는 학업 능력을 갖춘 자<개정 2022.00.00.>

2. 본 대학교 학칙에서 규정하는 입학자격을 갖춘 자<신설 2022.00.00.>

3. 국내 관련법에 따라 입국 및 입학이 가능한 자<신설 2022.00.00.>

④ 제3항에 따라 입학한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2급 소지자의 경우 입학 후 1년간 300시간 이상의 한국어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. 다만,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2급을 소지한 입학생이 입학 후 첫 학기 중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3급을 취득할 경우 연수시간은 120시간으로도 충족된다. <개정 2017.12.6.>

⑤ 본 대학교와 MOU를 체결한 국외교육기관에서 추천한 고교 졸업 및 졸업예정인 우수 학생에 한하여 소정의 심사를 거쳐 한국어 위탁교육(최대 1년 6개월)을 실시하며, 한국어 위탁교육기간 동안 한

국어능력시험(TOPIK) 3급 이상을 취득한 학생에 한하여 조건부입학을 허가한다.

⑥ 특수성이 인정되는 학과 및 별도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유학생에 대하여는 제3항 제1호의 조항을 예외로 할 수 있다.<신설 2022.00.00.>

⑦ 상기 조항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법무부 출입국, 외국인정책본부의 관련지침을 준용한다.<신설 2022.00.00.>

제6조(등록금) 유학생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, 교류학생은 해당 협정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(면제 포함)한다.

제7조(학사관리) 유학생의 수업 및 출결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.

① 학사일정 등을 안내하여 수업 및 출결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이 발생할 경우 담당교수는 국제교류센터에 해당 학생의 명단을 통보하여 담당자가 지도할 수 있도록 한다.

1. 연속 3일 이상 무단결석 학생
2. 수업 부적응 학생
3. 과정 또는 결과평가 성적이 매우 저조한 학생

③ 수강신청은 해당 학과 및 국제교류센터에서 지도한다. 다만, 유학생의 1학년 1학기 수강신청의 경우 학과장의 책임 하에서 조교가 일괄적으로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.<개정 2022.00.00.>

④ 수강신청 시 졸업에 필요한 전공과 교양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수강신청을 지도한다.

제8조(장학관리) 유학생의 장학금 지급은 본 대학교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제9조(생활지원) 유학생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관리·지원한다.

1. 기숙사 입주를 원하는 경우 우선 입주를 원칙으로 한다.
2. 주변 생활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한다.
3. 수업 및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을 학기당 2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4. 주거지 정보 및 연락처를 파악하여 비상연락 체계를 수립한다.

제10조(문화활동) 유학생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산업발전에 대한 현장감을 주기 위해 문화탐방 또는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11조(취업지원 및 알선) ① 유학생들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생활의 도움이 되도록 건전한 시간제 취업을 알선하고, 졸업 후에는 취업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.

② 유학생이 재학 중 시간제 취업을 할 경우,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고를 하여 불법 취업을 방지한다.

제12조(보험가입) ① 유학생은 보건복지부의 “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”에 의한 건강보험과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적극 유도한다.

② 유학생은 고지된 보험금을 납부함으로써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, 보험 미 가입 시 장학혜택을 포함하여 제반 유학생 대상 행사 참가에 대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.

③ 국제교류센터는 유학생에게 보험가입 관련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
제13조(변동신고) 미등록, 휴학, 제적 및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유학생의 유학이 종료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한다.

제14조(준용)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출입국관리법과 교육부의 “외국인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” 및 본 대학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5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